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
단
법
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병원장

참 조

제 목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개정·공포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(2024.10.4.)
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·공포(2024.10.4.)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

-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방법 신설 등(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
 -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,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함
 -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
 -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(제18조의3제5항·제6항 신설)
 -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함
 -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등(제35조)
 -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(4시간 → 8시간)
 -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(별표 14 제1호마목부터 자목까지 신설)
 - (업무 5종 추가) ①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, ②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 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, ③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, ④심전도 측정 및 전송(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), ⑤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(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,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)
- ※ 2025.1.1일부터 시행. 단, 119구급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은 공포 즉시 적용

- 붙임 1.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1062호, 2024.10.4.)
2.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
3.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99호)

붙임 자료는 '협회 홈페이지-협회업무-정책국' 또는 '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'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대리 전세영 팀장 최명희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4-344호(2024.10.10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/ www.kha.or.kr

TEL. 02)705-9235 FAX. 02)705-9229 E-mail: syjeon@kha.or.kr